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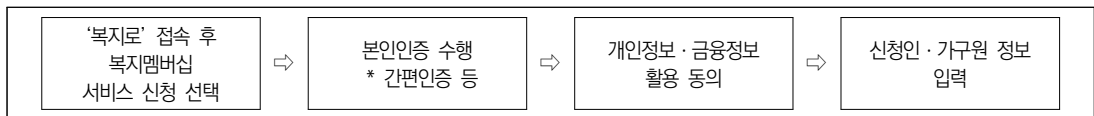
I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 ①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 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고자료」 21501. 급여기준과. 2024. 1. 21.

참고 1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83종+6종) 목록

□ 생애주기별 안내사업(10종)			□ 자격확인 안내사업(41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읍면동	1	해산급여	읍면동
2	0~5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2	양곡할인	읍면동
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읍면동	3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읍면동
4	아동수당 지급	읍면동	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5	시간제보육	읍면동	5	아동발달지원계획(디딤씨앗통장)지원	읍면동
6	다함께 돌봄 사업	기타	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읍면동
7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소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읍면동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소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읍면동
9	부모급여	읍면동	9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읍면동
10	첫만남이용권	읍면동	10	장애인 활동 지원	읍면동
			11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읍면동
			12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읍면동
			13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읍면동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15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읍면동
			16	의사상자 등 지원	읍면동
			17	통합문화이용권	읍면동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읍면동
			19	가스요금할인	읍면동
			20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읍면동
			21	TV수신료 면제	읍면동
			2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읍면동
			23	이동통신 요금감면	읍면동
			24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군구
			25	에너지바우처	시군구
			26	보조공학기기지원	공공기관
			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2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소
			29	노인 안검진 및 개인수술	보건소
			30	초중고 교육 정보화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읍면동
			32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읍면동
			3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읍면동
			3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읍면동
			35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36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온라인
			3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읍면동
			38	영양플러스	보건소
			3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읍면동
			40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읍면동
			41	일상돌봄서비스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32종)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2	고교학비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읍면동
3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4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5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6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동
7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읍면동
8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읍면동
9	기초연금	읍면동
10	장애인연금	읍면동
11	차상위 장애수당	읍면동
12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읍면동
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14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읍면동
15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
1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17	발달재활서비스	읍면동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읍면동
1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읍면동
20	아이돌봄 서비스	읍면동
2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소
22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소
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
2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2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
2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소

2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소
28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소
29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30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발급	보훈지청
3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3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번호	사업명	신청장소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읍면동
2	서울시 장애인 bus요금지원	읍면동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가족센터
4	서울권 교육서비스	온라인
5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읍면동
6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관

참고 2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

□ 지자체 복지서비스(6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선정기준	담당자
1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장제급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기준 가구당155백만원 이하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
2	서울시 장애인 bus요금 지원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대상 bus요금 지원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6세 이상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
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를 지원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5만원 한도)	3~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김나라 주무관 (02-2133-7991)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6~64세의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5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지원	월 4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 장애아동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6	서울권 교육서비스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기회 부여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과 서수지 사무관 (02-2133-9278)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선정기준
1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 지원	응급호출기 등 ICT기기 설치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2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 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 지원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 (13~39세)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II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편리하게 온라인 감면 적용 가능 -
- 이외에도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 지원 신청 허용 등 내용 담은 대통령령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
-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도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고자료」 21533. 장애인정책과. 2024. 1. 30.

III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 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종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고자료」 21537. 상병수당추진단. 2024. 1. 30.

IV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 없는 시행 논의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1.) -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신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신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신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생통보제 시행〉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올해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또한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단, 방문 신청 필수).

〈입양제도 개편 추진〉

-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되었다.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고자료」 21548. 아동복지정책과. 2024. 2. 1.